

## 범죄 신고 요령

-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, 112로 신고하면 경찰로부터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고할 때는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시고 언제·어디서·어떻게 피해를 당했으며, 범인의 인상·특징·휴대품·인원·도주 방향 및 교통수단 등을 침착하게 진술합니다.
- 112 신고는 휴대전화(영상통화 가능), 일반전화, 공중전화로 할 수 있으며, 공중전화 긴급통화(빨간색 긴급통화 버튼+112) 이용 시, 동전 없이도 가능하며 범죄가 아닌 다른 긴급 상황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 
※ 외국인이 112신고 시, 3자 통역서비스(경찰관-통역-신고자) 방식으로 범죄(피해) 신고 접수
- 전화통화가 곤란한 경우 '112 긴급신고앱' 또는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 
※ '112긴급신고앱'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
- 어지럽혀진 범죄 현장은 증거의 확보를 위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보존하고, 경찰관이 현장을 살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도움요청 전화번호

| 범죄신고 및 긴급전화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범죄 신고 (경찰청)            | 112       |
| 학교폭력 신고센터 (경찰청)        | 117       |
| 화재·응급환자·긴급구조 신고 (소방청)  | 119       |
| 해킹·스팸·개인정보침해 신고 (KISA) | 118       |
| 해바라기센터 (여성가족부)         | 1899-3075 |
| 미아·가출인 신고 (경찰청)        | 182       |
| 여성 긴급 상담 전화 (여성가족부)    | 1366      |
| 다누리 콜센터 (여성가족부)        | 1577-1366 |

| 기타 생활민원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(법무부)      | 1345 |
|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(행정안전부)   | 110  |
| 외국인 관광 안내 (한국관광공사)    | 1330 |
| 인권침해 진정·상담 (국가인권위원회)  | 1331 |
| 법률상담 (대한법률구조공단)       | 132  |
| 아동보호전문기관 (보건복지부)      | 129  |
| 청소년 사이버 상담 전화 (여성가족부) | 1388 |

## 체류 외국인 지원 정책

-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「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」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.
- 「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」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지방출입국·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.
- 대상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.
  - (형법) 살인, 상해·폭행, 과실치사상, 유기·학대, 체포·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강간·추행, 권리행사방해, 절도·강도, 사기·공갈
  - (특별법)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, 교통사고처리특별법,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, 직업안정법(제46조)
-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범죄(피해)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·NGO 단체 등을 '외국인 도움센터' 로 지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이용 절차

1. 외국인 범죄 피해(민원) 발생
2. 외국인 도움센터 신고 또는 상담
3. 외사경찰 접수·상담
4. 경찰서 또는 해당기관 통보·처리

- 외국인 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생활 중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센터 운영자가 외사경찰관에게 통보 하고, 신고 또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.



### 범죄신고 또는 상담 내용별 조치

- 폭행·가정폭력·학교폭력·사기(고소·고발) 등 형사사건 관련 신고는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
- 임금체불·산업재해·체류자격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·여성가족부·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며,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안내

※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장소는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로 문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범죄(피해)예방 교육과 운전면허 학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
 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· 근로현장 · NGO 단체 등 외국인들이 모인 장소에 직접 방문, 결혼이주여성 · 외국인 근로자 ·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, 자주 발생하는 범죄 사례 및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'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' 을 운영하고 있으며,
  - 운전면허 학과시험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를 통한 '외국인 운전면허교실'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(3개 언어로 교재 제공)

### 운전면허시험 관련 문의

-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
[www.safedriving.or.kr](http://www.safedriving.or.kr), 1577-1120
- 학과시험  
3개 언어 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) 응시가능

※ 범죄예방교실과 운전면허교실은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로 문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범죄(피해) 신고 및 민원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### 통역 서비스

- 관광통역안내 1330  
한국어,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8개 언어  
- 한국어,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(24시간)  
- 러시아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·인도네시아어(08:00~19:00)
- 다누리 콜센터 1577-1366 (24시간)  
베트남어, 몽골어, 캄보디아어 등 13개 언어
-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, 1661-2025  
타이어·인도네시아어·우루두어 등 20개 언어  
- 한국어·영어·중국어(09:00~22:00)  
- 베트남어 등 17개 언어(09:00~18:00)
- BBB코리아 1588-5644 (24시간)  
터키어·폴란드어·힌디어·말레이어 등 20개 언어

한국어 Korean  
[www.police.go.kr](http://www.police.go.kr)



#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가이드

##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

- 폭행·상해·협박·주거침입·재물손괴·감금·강요·공갈 등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거나, 가입·활동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.
- 칼·쇠몽둥이·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.
- 돈을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되며,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도박행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.
- 길에 세워진 자전거 등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가져가는 경우,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한 해외 송금 행위는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.
- 마약류를 제조·밀반입하거나 소지·투약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 받으며,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.
- 경찰청은 △불법 마약류 공급 사범 △외국인 마약류 사범 △인터넷(다크웹)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·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, 위반시 벌금(100만원 이하)이 부과됩니다.
-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속이려고 할 경우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불법 촬영, 성 착취물 전송 등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.
-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, ①인터넷·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·혐오감을 일으키는 말·사진을 전송하는 행위 ②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·유포하는 행위 ③불법 촬영물을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.

- 자동차·오토바이 운전 시, 무면허 등 다음의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.

-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

▶ 처벌조항 ① 자동차 ⇒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(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)  
② 오토바이 ⇒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(30만원 이하 벌금)

-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

| 혈중알코올 농도        | 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처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0.03%이상~0.08%미만 |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            | 면허정지 |
| 0.08%이상~0.2%미만  |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| 면허취소 |
| 0.2%이상          |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| 면허취소 |
| 2회 이상 음주운전      |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| 면허취소 |

▶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

-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자동차(일명 대포차)를 운행할 경우

▶ 처벌조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
-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.

- 담배꽂초, 껌,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.
-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,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.
-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, 도로를 건널 때에는 육교나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.

## 생활 속의 범죄예방 및 대응 요령

- 사기(불법 다단계 판매, 전화금융사기<Voice Phishing>, 인터넷사기 등)

- 불법다단계 : 일반적인 도·소매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,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이 되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 권유에 대해 무조건 거부합니다.
  -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고, 사재기·강제구매·대출 등을 유도하는 경우
  - 아르바이트, 재택 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
  - 상품이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·과장 광고하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

### 📢 등록된 합법 업체 여부 확인문의

- 공정거래위원회 [www.ftc.go.kr](http://www.ftc.go.kr), 044-200-4010
- 직접판매공제조합 [www.macco.or.kr](http://www.macco.or.kr), 02-566-1202
-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[www.kossa.or.kr](http://www.kossa.or.kr), 02-2058-0831

- 전화금융사기 :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이체·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, 계좌·카드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.

※ 사기단의 하부조직인 현금 인출책, 콜센터 텔레마케터 등의 역할도 사기범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받습니다.

### 📢 Voice Phishing 사례

- 가족(자녀)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도하여 납치를 빌미로 금전 요구
- 검찰·경찰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범죄연루 및 개인정보유출 명목으로 금전 요구
-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,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
- 카드사·통신회사를 사칭하여대금 연체방자하며 금전요구

-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거래 전 거래 상대방의 정보(전화·계좌 번호 등)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※ 경찰청([www.police.go.kr](http://www.police.go.kr)) 또는 사이버캅 (모바일 앱) 을 통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이력 검색 및 피해 신고 가능

- 가정폭력·데이트폭력

- 가정폭력·데이트폭력이 발생할 경우, 주저하지 말고 경찰을 포함하여 친척·이웃·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.
  - ※ 사진·진단서 등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, 여성단체·심터 등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상담(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/ 다누리콜센터 1577-1366)

- 아동 실종·유괴

-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잘 아는 척 하면서 데려가거나 또는 강제로 데려가려 할 때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칩니다.
- 아이에게 본인 이름·나이·주소·전화번호·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, 외출 시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,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 둡니다.

- 학교폭력

-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·협박·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-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, 폭력배에게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,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

- 성범죄(강간·강제추행, 불법촬영, 성매매 등)

-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씻지 말고 입었던 속옷과 옷을 그대로 보관하고 112에 신속히 신고해 주세요.
- 범인의 특징이나 생김새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두세요.
- 주변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들어주고, 1577-1366 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

- 스미싱(Smishing)

-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'무료쿠폰 제공' 등의 내용으로 전송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,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·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지인으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하여 확인하고, 스마트폰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.

- 절도(빈집털이, 소매치기, 날치기 등)

- 장외출이나 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정기 배달물이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, 귀금속이나 현금 등 귀중품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·시장 등 혼잡한 곳에서는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, 소지품을 들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금융기관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청원경찰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